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 301 회 임 시 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

2024. 2.

도 하 석 의원

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: 도하석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역량 강화와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달서구의 위상을 높인 단원 등에 대한 표창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한 운동 환경 조성,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및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2조에서는 직장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·육성하기 위한 설치 규정을 명시하였고,
- 안 제18조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역량강화,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에 관한 실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19조에서는 실적이 우수한 단원 및 달서구의 위상을 높인 단원 등에 대한 표창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

-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4년 2월 2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,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□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역량강화와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달서구의 위상을 높인 단원 등에 대한 표창 규정을 신설하여, 보다 안전한 운동환경에서 역량 개발을 함으로써,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 및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,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**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(도하석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00924013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일자: 2024. 2. 2.

발 의 자: 도하석, 남현주, 고명욱, 서보영,
임미연, 김장관, 이진환, 권숙자,
이선주, 박정환

1. 개정이유

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역량 강화와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달서구의 위상을 높인 단원 등에 대한 표창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한 운동 환경 조성,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및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직장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·육성하기 위한 설치 규정(안 제2조)
- 나. 역량 강화,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에 관한 실시 규정(안 제18조)
- 다. 실적이 우수한 단원 및 달서구의 위상을 높인 단원 등에 대한 표창 관련 규정(안 제19조)

3. 일부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 1
- 나. 관계법령: 붙임 2
- 나. 비용추계서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“(설치종목)”을“(설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직장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·육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(이하 “경기부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경기부의 종목은 검도와 장애인 수영으로 하며,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,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교육 등) 구청장은 경기부의 역량강화와 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9조(표창) 구청장은 실적이 우수한 단원 및 달서구의 위상을 높인 단원 등에 대하여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 1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설치종목) <u>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(이하 “경기부”라 한다) 설치</u> 종목은 <u>검도, 장애인 수영으로 하고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제18조 (생 략)</p>	<p>제2조(설치 등) ① <u>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직장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·육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(이하 “경기부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u></p> <p>② <u>경기부의 종목은 검도와 장애인 수영으로 하며,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제18조(교육 등) <u>구청장은 경기부의 역량강화와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9조(표창) <u>구청장은 실적이 우수한 단위 및 달서구의 위상을 높인 단위 등에 대하여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20조 (현행 제18조와 같음)</p>

□ 「국민체육진흥법」

제10조(직장 체육의 진흥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·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.

④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·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.

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지도·감독한다.

제18조의2(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□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

제7조(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)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·운영하고 체육지도자(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)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공공단체로 한다.